

# 특별공급 청약안내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일정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19(월) 08:00~17:30 (인터넷 신청 '청약Hom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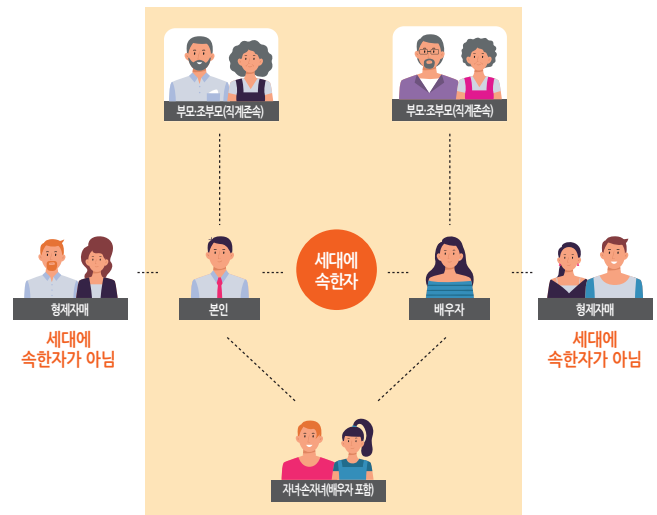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여부도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청약통장 2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름	순위에 따른 선정 (※세부 안내문 참조)	별도 배점표에 따름 (※동점자의 경우 자녀수,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	기준소득에 따름 (같은소득의 경우 당해, 주첨 순으로 우선 선정)	민영주택(가점제)배점표에 따름
예비입주자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한정)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주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점자들과 함께 주첨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1호 이상 소유한 경우 유 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